



-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2020. 2. 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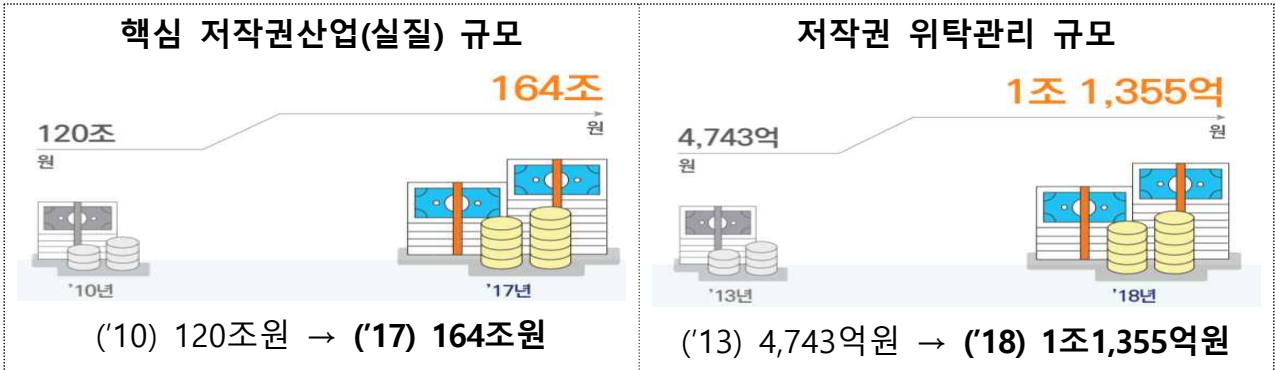


목 차

| | |
|----------------------------|----|
| I. 그간의 성과 | 1 |
| II. 비전2030 수립 필요성 | 2 |
| III. 기본 방향 | 3 |
| IV. 핵심 과제 | 5 |
| V.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 9 |
| VI. 한국저작권보호원 3대 주요과제 | 12 |

I. 그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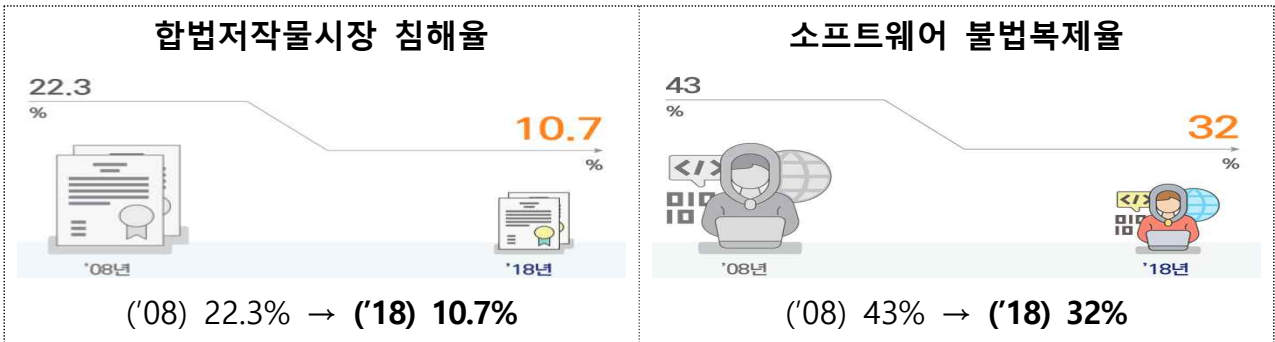
□ 핵심 저작권산업 및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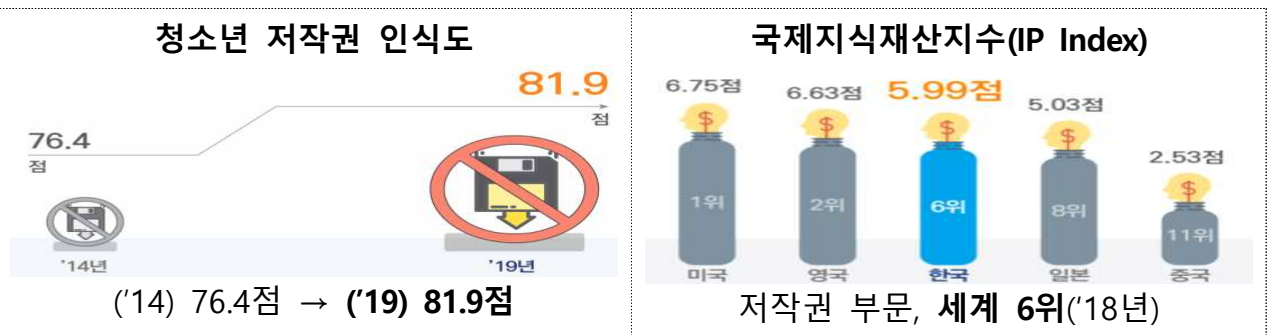
□ 저작권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지속 감소



□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제적 평판 향상



Ⅱ. 비전2030 수립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토대로서 저작권의 중요성 증대**
 - (기회) 창작의 유인이자 자산인 저작권은 콘텐츠산업을 위시한 문화경제의 근간이자 선순환의 핵심 요소
 - (위기)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기반 서비스 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불확실성 및 분쟁 증가

-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투명성 문제 지속 제기**
 - (기회) 창작환경 개선 및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위기) 음원사재기 의혹, 저작권료 수익분배 등을 둘러싼 갈등, 저작권 유통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기회) 저작권에 관한 국민의 인식 개선, 권리단체의 적극적 의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호환경 개선
 - (위기) 새로운 유형의 불법 유통경로 지속 등장 등 저작권 범죄의 국제화·지능화로 효과적인 적시 대응 곤란

- **한류콘텐츠에 대한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 (기회) 케이팝(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확대
 - (위기) 현지의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등으로 한류콘텐츠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애로

⇒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분야 비전을 수립하여 안정적 저작권 생태계 구축 및 산업 발전 지원

Ⅲ. 기본 방향

비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성과
목표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분야

6위('18)

⇒ 3위('30)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

1조 1,355억원('18)

⇒ 3조원('30)

불법복제물

이용률

22.2%('19)

⇒ 12%('30)

저작권

무역수지

14억불('18)

⇒ 100억불('30)

전략
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한류 확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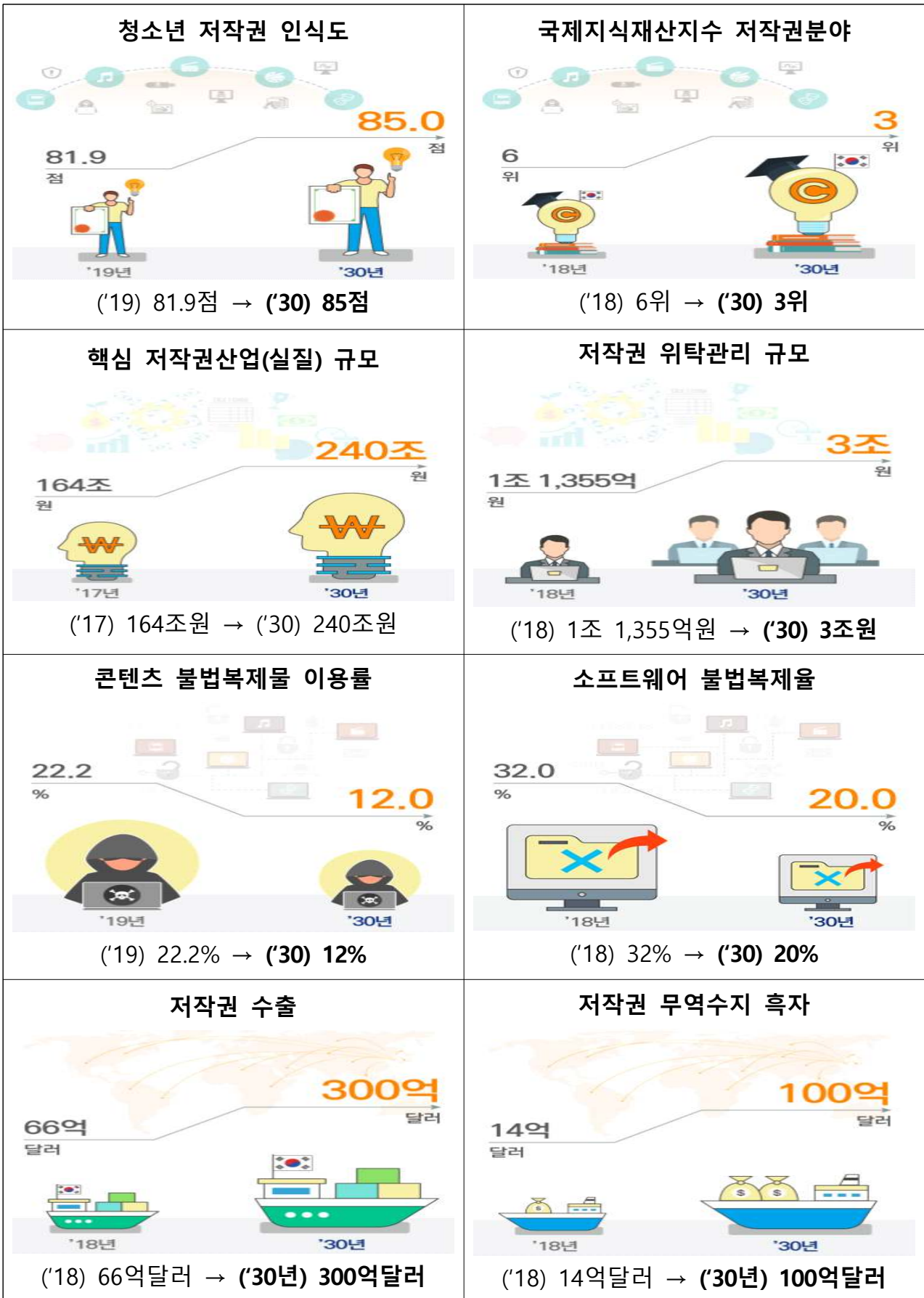
1.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2.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3.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1.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2.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3.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

1. 침해 다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2. 새로운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3. 혁신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1.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2.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3. 국제기구 협력·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 세부 성과 목표 >



IV. 핵심 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

□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

- **(신성장산업 촉진)**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보호·이용의 명확성 제고
- **(합리적 구제)** 경미한 침해의 형사처벌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직권조정 등 분쟁 예방 및 해결의 효과성 제고
- **(저작권법 전부개정)** '06.12.28. 전부개정 이후 수차례 일부 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조문,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제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

□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 **(영상콘텐츠 확충)** 동영상 검색시대에 대응하여 저작권 지식 및 이슈 정보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제공
- **(국민참여 확대)** 저작권 침해 경고문구 공모전, 공정이용 응원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확대
- **(열린 교육)** '저작권교육체험관'을 통한 체험형 교육 강화, 학교·기업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교육콘텐츠 개방·공유 확대

□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 **(사업화 전문가 양성)** 창작부터 수익구조 창출까지 저작권 기반 사업을 조율·관리하는 저작권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 **(저작권통계 개선)** 업종별·권리별 시장규모 산출 및 전체 저작권 거래시장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도출
- **(전문기관 역량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및 상담·연구 역량 강화, 등록심사 신뢰도 제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 심의 기능 확대, 국내외 저작권보호체계 및 기술적 대응능력 강화

2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 (단계적 사용료 자율화)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간 자율협의를 의한 결정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필요시 정부의 사후조정)
- (정보공개 강화) 이용약관 등 각종 규정, 경영현황, 관리 저작물 목록 등의 상시 공개로 저작권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보상금 관리 개선) 보상금 분배율 제고(80% 목표) 및 5년 이상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단계적 완화(30%→10%)

□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 (통합전산망 운영) 저작물 유통사업자 등의 이용정보 기록을 중립 기관에서 통합 수집하고 권리자단체 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 제고
- (개방형 권리정보 구축) 유통사·방송사 음원 정보와 저작권단체 권리정보를 통합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산·분배의 완결성 확보
- (통계 분석·활용) 유통사·방송사 음악 이용내역의 거대자료 분석을 통해 음악 이용 양태, 특이사항 등을 국민·권리자·산업계에 정보 제공

□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

- (공유저작물 체계적 제공) 1인 미디어, 교육 현장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 수집하여 창작공간·도구 등에 체계적 제공
- (휴면저작물 이용 확대) 권리자불명 저작물 수집·제공 시스템 확대 구축 및 법정허락 판단요건 명료화 등으로 이용환경 개선
 - * 법정허락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 찾기 및 창작자 지원 등 공익목적에 활용
- (확대 집중관리 도입) 권리자 미확인으로 지급 보류된 사용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 침해 다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 온라인 과학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지능화·국제화되는 침해에 적시 대응
- (현안별 기획수사 강화) 신규침해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침해유형별 기획수사' 강화
-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해외 기반 침해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보호원 등 관계기관 및 외국 저작권 당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 (장르별 협의체 운영) 침해 형태별 효과적 대응 위해 웹툰, 게임, 방송 등 장르별 민간참여 침해대응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작성·활용

□ 새로운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 (상시 모니터링 확대) 국내외 모니터링 통합·연계 등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 확대 및 모니터링 대상 확대
- (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보호원 내 디지털포렌식팀 확대 운영 및 인력 재배치
- (미래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거대자료 기반 불법복제 경로 실시간 분석·차단 등 보호 신기술 개발·활용

□ 혁신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 (공공부문) 기관·사업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적정 편성 추진,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을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도입
- (민간부문) 민관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한 불법단속 고도화 및 침해 빈발 업종(건설·기계 등)으로 '저작권OK' 인증 확대
- (예방교육)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활성화 및 영세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을 확대하여 저작권 자율준수 지원

□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으로 지원체계 구축, 주요 국가·장르별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방안 마련
- **(해외지원 강화)** 한류 확산 국가 중심 재외공관·해외문화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파견,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단계적 증설(현행 4개소) 통해 국가별 침해대응력 강화
- **(보호환경 개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저작권 보호 시스템·기술 전수 등을 통해 현지 보호환경 개선 지원

□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 **(실태조사 공유)**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관리 국가별로 저작권 제도, 한류 저작물 유통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맞춤형 대응 지원
- **(분쟁해결 지원)** 한류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를 신규 도입, 중소 콘텐츠기업에 계약서 상담, 소송 지원 등 법률 서비스 제공
- **(민간단체간 협력 지원)** 국내외 저작권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불법유통 공동 대응 등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 **국제기구 협력 및 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 **(국제분쟁 해결체계 구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 센터 한국지부 설립 추진 및 신속한 국제분쟁 해결 지원
- **(국가간 협력 확대)** △선진국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지역 포럼 내실화, △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저작권 발전 지원
- **(맞춤형 통상전략 추진)** △전략적 중점 시장의 저작권 보호수준 강화, △신흥 유망시장의 개방 확대 등 시장별 차별화된 통상전략 추진

V.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1 제도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제고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등록심사 품질향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 지원
- 조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전문성 제고로 분쟁해결 기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 (선택적 실질심사제 운영) 방송프로그램 포맷, 글자체 등 저작권 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창작물에 대해 실질심사 등록을 통해 국내 권리범위 인정
- (저작물성 판단기준 마련) 방송프로그램 포맷, 글자체, 안무구성·게임규칙 등 저작물성 판단기준 마련
 - * 등록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저작물 분류표 및 등록절차 개정 추진

□ **직권조정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

- (직권조정제도 운영)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 운영
 - *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일방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건으로 한정.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인정
- (직권조정제도 조기정착) 내부 지침 정비 및 운영방안 수립, 전자 조정 시스템 개발, 조정조사관 확충 등 직권조정제도 이행 만전

□ **전문조정부 신설을 통한 조정 전문성 제고 및 수요 대응**

- (전문조정부 신설) 전문성 있는 조정인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저작물 유형별 전문조정부를 신설, 인적 구성 개선
- (전문조정부 운영) 조정위원으로 저작물 유형별 전문가 위촉, 조정인 선택제 시행 및 상임조정위원 확충, 법원연계조정 확대 등 추진
 - *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2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저작권산업 경쟁력 강화

-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저작권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저작권 관리와 사용료 정산·분배 투명화에 기여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정착 기반 마련

- (법제화) 통합전산망의 법적 근거 마련, 수집 대상 정보 등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정보의 권리자·사업자 등 대국민 제공을 제도화
 - * 법제도 추진 내용 : ① 설치 근거 및 운영 주체 ② 이용정보 제출 대상자 ③ 수집 대상 이용정보 항목 등
- (현장의견 반영)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신탁관리단체, 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의견 수렴 통하여 현장에서 수용성 높은 형태로 통합전산망 기술 개발

□ 통합전산망 저작권 분야별 단계적 구축

- (1단계 : 음악) 매장음악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 노래연습장 등(공연) 이용내역 통합전산망 구축 및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별도구축)과 연계 체계 마련
 - * (매장음악) 10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이용기록정보(로그) 수집
 - *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온라인 노래반주기기의 음악 이용기록정보 수집
 - * (방송)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음악 전자큐시트 수집
- (2단계 : 방송영상)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TV, 지역종합유선방송 등)의 방송 편성표 바탕으로 실제 방송(저작물 이용) 여부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개발
- (3단계 : 웹툰·전자책)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웹툰 및 전자책 유통플랫폼 대상으로 이용내역 수집 체계 개발

□ 『가칭』저작권 이용정보 관리센터』 설립 추진

- (이용정보 관리)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용내역 누락이나 사재기 의심사례 등 비정상적 이용을 알리는 모니터링 활동 수행
- (거대자료분석 지원) 저작권 관련 사업자·연구자 등이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전망 등의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
 - * 영업비밀, 개인정보, 민간시장 영역 고려하여 소정 기준과 절차 마련

3

공유저작물 향유 기반구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공유저작물을 수집·제공하여 국민 문화 창작 활성화
- 오픈소스 활용 확산하고 관련 잠재적 분쟁 예방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기여

□ 저작권 자유이용 허락 국민 공감과 참여 촉진

- (자유이용허락 확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국민 인식과 활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의 정보 체계적 수집 제공
- (국민참여형 공유문화 확산) 국민들의 창작 기여 통해 공유저작물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창작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사업 전개
* (예) 민간창작자 협력, 공유저작물(캐럴, 애국가 등)을 활용한 재창작 운동 전개

□ 활용성 높은 옛 저작물 발굴하는 ‘보물찾기’ 사업 활성화

- (휴면저작물 발굴) 사장될 위기의 옛 저작물 등*을 적극 발굴·수집하여 창작자 및 국민이 자유이용 가능한 공유저작물로 제공
*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절판도서 등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법정허락 등 선행)
- (주제별 보물찾기) 국민 관심 있는 주요 계기*에 따라 국민과 기업 창작활동에 재료(소재)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상시 공모 수집
* (예) 6·25전쟁 70주년, 한국영화 100주년 등 한국인 정서와 역사·사회·문화가 반영된 주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강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 대상 SW라이선스 교육 확대
* 국내기업의 95%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 조건부 공유저작물인 오픈소스SW 활용
- (자격증 제도 도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검증된 전문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오픈소스SW 활용 생태계 조성
*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을 확대하여 자격증 제도와 연계 추진

VI. 한국저작권보호원 3대 주요과제

1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화 · 국제화

□ 콘텐츠 장르별 침해 대응 전문화

- (장르별 침해대응협의체) 다양한 침해 형태 및 업종별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장르별 협의체 운영 및 대응 안내서 마련·배포
 - (산업별 침해 보고서 발간) 권리자 참여로 산업별 특성과 주요 이슈·동향을 반영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발간
 - (정책현장 중심 기획수사 지원) 침해실태조사 분석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청취, 주요 침해 경로 및 침해 이슈에 대한 기획수사* 지원
- * (예) 맞춤형 누리방송(IPTV)을 통한 콘텐츠 유출(영화, 방송), 불법 USB 음반 유통(음악), 사설서버 운영(게임), 대학교재 불법복제(출판), 온라인만화 공유사이트(웹툰) 등

□ 수사 공조의 국제화

- (국제 사법공조) 저작권 침해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특사경과 국가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지원
- * ①미국 국토안보부, ②영국 지식재산범죄전담부, ③네덜란드 과학수사 연구소, ④미국 포렌식 지역연구소 등과 협조채널 구축
- (침해정보 수집 제공)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 분석 정보 제공, 구글 등의 신뢰기관 등록을 통한 침해 정보 수집 및 특사경 제공 등

□ 현장 중심의 불법 교재·소프트웨어(SW) 근절 대응력 강화

- (시스템 구축) 공공·교육 기관용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캠페인)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컨설팅 확대 및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 운동(GREEN ZONE 캠페인) 추진
- (국민 공감 홍보) △검색포털,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드라마, 예능 등 방송연계 홍보 등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 강화

2 한류콘텐츠 저작권 해외보호 강화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 및 기능 강화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 선진국(수사공조 및 교류협력)·신흥한류국(침해대응) 내 '21년부터 '23년까지 연간 2개소 단계적 증설 추진
- (맞춤형 기능강화) 신흥 한류국은 침해대응 중심, 저작권 보호 선진국(미주, 유럽 등)은 정부 간 수사공조 및 권리자 단체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별 사무소 기능 차별화

□ 민간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확대

- (저작권이용권 사업 신설) 해외 진출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현지 저작권 분쟁 해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신규 운영
 - (해외 협력관계망 확대) △국내 업계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업사업(광고차단 등) 참여 지원, △해외사무소-현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확대, △해외 검색포털 협력 확대
- * (현재) 구글 → (향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저작권 보호 체계 해외 전수 추진

- (외국의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지원) 국내의 선진 저작권 보호 기술 및 단속경험 등을 해외 국가*에 전수하여 현지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지원
- *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유관기관 해외 수요 다수 존재
- (현지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저작권 해외사무소 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I-COP) 현지어판 구축·운영하여 현지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 저작권 침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1단계 :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현재 웹하드와 토렌트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블로그, 유튜브, 모바일웹 등 점검 대상 확대
 - 국내·외 모니터링 통합, 해외 모니터링 국가 확대(동남아 중심 → 남미 등 한류 확산 지역)
 - * 종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별 기능강화 추진
- (2단계 : 지능형 모니터링 구축) 인공지능(AI)의 자기학습을 통한 지능형 모니터링 구현 등 신기술 탑재로 모니터링 역량 제고
 - 정형화된 모니터링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I-COP)으로 대체, 수사 지원 모니터링(청년) 및 해외 모니터링(다문화) 등에 재택인력 재배치

□ 지능형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체계 마련 및 활성화

- (과학수사 지원 강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전문화 전략 수립 및 지능형 저작권 침해 디지털 증거처리 체계 도입, 저작권 디지털 포렌식 표준 개발 등 저작권 과학수사 공공체계 구축
 -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강화
-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표준 인정) 수사지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센터 국제표준 인정 획득 등 국제 수준으로 운영 고도화

□ 미래형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및 개발(R&D) 강화

- (연구 개발) '포렌식 마크',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 저작권 기술 R&D 결과 활용, 신규 과제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산·학·연 보호기술 연구 그룹 운영
 - (단기) 침해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적 대응 과제 발굴
 - (중기) 수요자 맞춤형 요소 기술 개발, 국가 R&D 연구성과물 활용 확대
 - * 해외 한류 콘텐츠에 포렌식 마크 이식, 웹툰 내 디지털핑거프린팅 삽입·검출, 디지털콘텐츠 보호기술(DRM)을 통한 차단 등